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시설 내 교통사고 운전자 형사책임 강화〉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6호)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4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1. 이광희의원안	1
2. 김승수의원안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이광희의원안	1
2. 김승수의원안	2
III. 검토의견	4
1. 학교시설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형사책임 강화	4
가. 개정안의 내용	4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의 특례	9
다. 검토의견	13
라. 관계기관 의견	17

I. 제안경위

1. 이광희의원안(의안번호 제416호)

가.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6. 12.

나. 회 부 일 : 2024. 6. 13.

2. 김승수의원안(의안번호 제684호)

가.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20.

나.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광희의원안(의안번호 제416호)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2. 김승수의원안(의안번호 제684호)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측정 불응,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실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포함할 뿐, 정작 교내 운동장이나 진입로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시설 경계 내에서 가중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현실적으로 학교 내 운동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함에도, 교내의 운동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육 시설 내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학교시설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형사책임 강화 (이광희 의원안 및 김승수의원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양 개정안은 모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학교시설 내부인 학교 운동장, 진입로 등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양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범위나 구체적인 적용요건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음. 이광희의원안은 학교시설의 범위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김승수의원안은 학교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적용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광희의원안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적용요건을 한정하고 있으나, 김승수의원안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상대적으로 적용요건을 더 넓게 규정하고 있음.

[illegible]

현행	이광희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지 아니한 경우(운전자 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1. ~ 12. (생략)	1. ~ 12. (헌법과 같음)	1. ~ 12. (헌법과 같음)
<신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운동장 및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 내(진입로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

현 행	이광희의원안	김승수의원안
	<u>특수학교</u>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어린이집 라. 「초·중등교육 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 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 학교,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안교 육기관,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223조 에 따른 국제학 교 및 「경제자 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 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 국교육기관 중	<u>학교</u> 다. 「초·중등교육 법」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민 학교, 제45조 및 제5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 술학교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어린이집 마. 「초·중등교육 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 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 학교,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안교 육기관,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223조 에 따른 국제학

현행	이광희의원안	김승수의원안
	<u>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u>	<u>교 및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아·초등·중등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u>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의 특례

-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법 제1조¹⁾)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운전자의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정한 경우 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²⁾의 죄(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단서에 따라 ①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³⁾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②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⁴⁾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③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른바 “12대 중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른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단서에 따라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또는 ③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4)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소위 ‘12대 중과실’>

	위반내용		위반내용
1호	신호 위반	7호	무면허 운전
2호	중앙선 침범	8호	음주 운전
3호	제한속도 20km/h 초과	9호	보도 침범
4호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10호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5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호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6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12호	화물적재 안전조치 위반

다. 검토의견

- 양 개정안은 모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학교시설 내부인 학교 운동장, 진입로 등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 등에서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더라도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학교 운동장, 교내 이동로 등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여러 번 문제가 되었던 점(2012년 인천외고 운동장 교통사고 사례⁵⁾, 2022년 제주 초등학교 내 교통사고 사례⁶⁾ 등),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지정되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상해 등의 경우 이미 소위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 한국경제TV, 「운동장서 학생 치고 보험부터 계산, 블랙박스 공개」, 2012. 4. 24. 등

6) KBS 뉴스, 「교문 넘어 달려온 차에 ‘쿨’...“스쿨존 사고는 아니다”?」, 2022. 9. 3. 등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 진입로 등 학교시설 내부에서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소위 ‘12대 중과실’에 포함하여 형사처벌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 및 학생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양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다만,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운전자의 형사책임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발생 억제 등의 필요성 측면과 형사처벌 특례 유지를 통한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 등의 필요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임.

○ 특히, 양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범위나 구체적인 적용요건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먼저, 이광희의원안은 학교시설의 범위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김승수의원안은 학교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적용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광희의원안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적용요건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김승수의원안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이 모두 「도로교통법」에서 부과한 의무의 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11호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상해의 경우에도 상해의 대상을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광희의원안의 규정이 현행법 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좀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아울러, 대상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광희의원안은 ‘시설(운동장 및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승수의원

안은 ‘시설의 경계 내(진입로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광희의원안과 같이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양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분	이광희의원안	김승수의원안
대상 장소	시설 (운동장 및 진입로 등 포함)	시설의 경계 내 (진입로 및 운동장 포함)
학교시설 대상	· 유치원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교육기관으로서 <u>유치원, 초등학교</u>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유치원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u>중·고등학교</u>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교육기관으로서 <u>유아, 초등, 중등</u>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의무위반 내용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의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피해자 범위	어린이	사람

라. 관계기관 의견

- 경찰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양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이광희의원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등의 시설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예를 들면, 직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경우 직장 및 아파트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김승수의원안에 대해서는 ① 개정안에서 언급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다양한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장소적 요건만을 두고 있고 운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현행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와 같이 보호객체를 ‘사람’이 아니라 ‘어린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 역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도로교통의 안전, 신속한 피해회복,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자동차 이용 시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처벌 특례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다만, 김승수의원안에 대하여는 ① 교육시설 내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더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미성년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②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입법형식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구체적인 의무위반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